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1**

2. 세출예산안 **2**

가. 개 요 2

나. 사업별 내역 5

다. 정부 재정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기준) 7

라.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8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9**

가. 일반회계 9

【공 통】

1.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산정의 근거 및 수준 재검토 필요 **9**

2. 세출예산안 **14**

가. 일반회계 14

【세부사업별】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 14

가. 개 요 ····· 14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시 일정 부분 국가 부담으로 조정하고 개표사무원의 업무수준에 부합하는 수당으로 현실화 필요 ····· 15

2. 정당사무지원(1132-320) ····· 20

가. 개 요 ····· 20

나.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상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보안체계 구축 필요 ····· 21

다. 후원회 설치 대상자 증가와 회계보고 시스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 26

3.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 29

가. 개 요 ····· 29

나.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통합선거교육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필요 ····· 30

다.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사업 '선거연수원 운영' 사업으로 재편성 필요 ····· 34

4.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38

가. 개 요 ····· 38

나. 공명선거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방식 검토 필요 ····· 39

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3) ····· 45

가. 개 요 ····· 45

나.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기록물 이관 등 예산 증액 논의 필요 ····· 46

6. 국제교류협력(7132-345) ····· 49

가. 개 요 ····· 49

나.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사업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50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 54

가. 개 요 ····· 54

나. 적정 유지보수 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 논의 필요 ····· 55

다. 선거정보센터 UPS와 배터리 간 분리 등 안정성 강화와 이중화를 위한 재해복구센터 점검 필요 ····· 58

8. 청사관리(7132-354) ····· 62

가. 개 요 ····· 62

나.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 파악 노력 필요 ····· 63

9.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 66

가. 개 요 ····· 66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성과 향상 필요 ····· 67

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의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72

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12억 9,9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A)	2026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1,299	1,299	-	-
51 관유물대여료	31	31	-	-
토지대여료(51-511)	26	26	-	-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5	5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	10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0	10	-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0	100	-	-
과태료(56-563)	100	100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3	3	-	-
변상금(57-571)	3	3	-	-
58 가산금	1	1	-	-
가산금(58-581)	1	1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25	1,125	-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125	1,125	-	-
69 잡수입	29	29	-	-
기타잡수입(69-691)	29	29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출예산안

가. 개 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1]은 2025년도 3,634억 700만원 대비 1,208억 6,700만원(33.3%) 증가한 4,84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금 액	363,407	484,274	120,867	+3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합 계	122,738	228,470	105,732	86.1
국회의원선거관리	-	52	52	순증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
재보궐선거관리	149	388	239	160.4
재외선거관리	1	48	47	4,700
위탁선거관리	136	116	△20	△14.7
선거보전금	-	631	631	순증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545	1,848	△697	△27.4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편성되어 있음.

사업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477	550	73	15.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40	1,348	108	8.7
공명선거기반조성	740	4,837	4,097	553.6
위법행위예방활동	7,439	10,956	3,517	47.3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408	419	11	2.7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3	257	164	176.3
선거방송토론	281	504	223	79.4
선거여론조사심의	238	337	99	41.6
법제지원및법규운용	336	399	63	18.8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340	1,837	1,497	440.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국제교류협력	926	995	69	7.5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37	205	68	49.6
차량및물품관리	605	1,105	500	82.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위원회운영	703	1,369	666	94.7
선거연수원운영	1,909	2,225	316	16.6
청사관리	25,005	26,712	1,707	6.8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119	6,278	159	2.6
예비금	50	50	-	-

※ 참고: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제외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사업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32억 8,000만원, 정당보조금 1,169억 8,700만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56억 2,600만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78억 8,100만원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1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위탁선거관리 경비 2,000만원, 선거장비및물품관리 6억 9,700만원,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800만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위탁선거관리	136	116	△20	△14.7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545	1,848	△697	△27.4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사업별 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선거의공정한관리」 및 「선거관리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은 공직선거관리, 정당발전지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선거관리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예비금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일반·지방행정					363,407	484,274	120,867	33.3	
	입법및선거관리				363,407	484,274	120,867	33.3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153,233	86,992	131.3	
			공직선거관리		2,876	16,363	13,487	468.9	
				대통령선거관리	-	-	-	-	
				국회의원선거관리	-	52	52	순증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	
				재보궐선거관리	149	388	239	160.4	
				재외선거관리	1	48	47	4,700	
				위탁선거관리	136	116	△20	△14.7	
				선거보전금	-	631	631	순증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545	1,848	△697	△27.4	
			정당발전지원		52,449	117,662	65,213	124.3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0,304	18,110	7,806	75.8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477	550	73	15.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40	1,348	108	8.7	
				공명선거기반조성	740	4,837	4,097	553.6	
				위법행위예방활동	7,439	10,956	3,517	47.3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408	419	11	2.7	
				선거관리지원	612	1,098	486	79.4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3	257	164	176.3	
				선거방송토론	281	504	223	79.4	
				선거여론조사심의	238	337	99	41.6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31,041	33,875	11.4	
			인건비		225,570	240,531	14,961	6.6	
			기본경비		15,099	15,273	174	1.2	
			기관운영지원		49,765	68,354	18,589	37.4	
				법제지원및법규운용	336	399	63	18.8	
				선거관리역량강화	-	-	-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340	1,837	1,497	440.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국제교류협력	926	995	69	7.5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37	205	68	49.6	
				차량및물품관리	605	1,105	500	82.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위원회운영	703	1,369	666	94.7	
				선거연수원운영	1,909	2,225	316	16.6	
				청사관리	25,005	26,712	1,707	6.8	
			선거행정정보화		6,682	6,833	151	2.3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119	6,278	159	2.6	
			예비금		50	50	-	-	
				예비금	50	50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정부 재정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기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43억원은 정부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 728조원의 0.0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년도 0.05%에 비하여 점유비가 0.02%포인트 증가함.

<연도별 선관위예산안의 정부예산안 점유율 현황('22년도~'26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정부 예산안(A)	선관위 예산안(B)	점유율(B/A)
2022년도	6,044,000	8,715	0.14
2023년도	6,387,000	4,073	0.06
2024년도	6,569,000	8,324	0.13
2025년도	6,774,000	3,634	0.05
2026년도	7,280,000	4,843	0.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정부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8.1%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33.3%임.

<2026년도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대비 선관위 예산증가율>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정 부	6,733,000	7,280,000	547,000	8.1
중앙선관위	3,634	4,843	1,209	3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 유무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심하고, 인건비·정당보조금 등 법정경비가 예산의 대부분(2026년도의 경우 76.8%)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음.

<2026년도 법정경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6년도 예산안										
	대통령선거관리	국회의원선거관리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인건비	소계
484,274	-	52	13,280	388	48	116	631	116,987	240,531	372,0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세출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예산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세출예산 현황('22년~'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872,594 (126.5)	406,700 (△53.4)	857,227 (110.8)	363,407 (△57.6)	484,274 (33.3)
전국단위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가. 일반회계

【공 통】

○ 과거 결산 실적과 선거규모, 이월금 반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징수재위탁·국세청 공조·체납자 공개 등 실질적인 회수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산정의 근거 및 수준 재검토 필요

□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입으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근거로서 직전 임기만료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 과태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선거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미만 득표자 등의 기탁금,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또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근거로서 재보궐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4억 5,000만원, 당선무효된 자의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4억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26년도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내역	예산액
과태료 (12-56-563)	- 직전 임기만료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 과태료 부과액 기준 편성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4억 5,000만원 -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자 등 선거비용보전금 반환금 4억원 -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2억 7,500만원	1,12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전액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34조[3]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은

2)「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징수결정으로 이월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미반환된 금액이 국가회계에 반영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편성의 산정 근거를 직전 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2026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아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 유형과 과태료 발생 규모가 다름. 실제 유사 선거 규모였던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산현액은 3억원이었고, 2022년 당시 징수결정액은 2억 3,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 1억원 편성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상당 부분이 미수납 상태로 이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2025년도 결산 기준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야 하나,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미수납액 이월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과태료는 선거 규모 및 성격, 과거 징수 실적, 미수납액 이월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통령선거 기준만을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2026년도 세입 규모를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은 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4] 전년도 미수납액 이월분 약 1.8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세입예산을 현 수준(1억원)보다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2026년도 기준 1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최근 4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실제 징수결정 및 수납 실적이 예산규모와 큰 괴리를 보임.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및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22	3,695	7,427	6,148	1,279
2023	710	1,729	476	1,253
2024	9,565	6,263	5,065	1,197
2025	1,125	3,279	2,077	1,20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2025년도 결산 기준 미수납액이 12억원에 달하고,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감안하면, 2021~2025년 내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2026년도 수입징수결정액으로 이월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됨.

□ 더욱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74억 2,700만원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을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11.25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저히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으로기탁금 국고귀속액,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미수납액 이월분(12억원 상당)을 반영해야 하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또한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① 선거규모 확대(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② 과거 결산 실적(징수결정액 증가 추세), ③ 미수납액의 이월 반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모두 과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6년도 세입예산은 과거 징수결정액 및 편성액,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규모 등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증액 편성하는 동시에, 미수납액의 실질 회수를 위해 징수재위탁·국세청 공조·체납자 공개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2.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 지방선거에서 참관인 수당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개표 절차를 수행하는 개표사무원의 수당이 참관인보다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당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은 2026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3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4,500만원 대비 132억 3,500만원 증액(29,311.1%)된 것임.

<202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311.1
선거관리일반	45	3,988	3,943	8762.2
사전투표관리	-	6,531	6,531	순증
투・개표관리	-	2,655	2,655	순증
당내경선관리	-	96	96	순증
선거소송	-	10	10	순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시 일정 부분 국가 부담으로 조정하고 개표사무원의 업무수준에 부합하는 수당으로 현실화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위촉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9만원, 개표사무원은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음.[5)]

또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며, 각 참관인의 수당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6)]

□ 위 규정에 따라 최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비 부담 100%로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사전투표 포함)에게 9만원, 개표사무원에게 7만 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음.

---

5)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반면, 지방선거의 경우 직전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의 수당 지급 수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개표사무원에게 6만원, 참관인에게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며, 해당 경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임.

< 선거별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 >

구분	직 책	수당(원)
제20대 대선(2022년) <국비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60,000
	개표사무원	60,000
	참관인	50,000
제8회 지선(2022년) **<지자체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60,000
	개표사무원	60,000
	참관인	100,000
제22대 국선(2024년) <국비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90,000
	개표사무원	**75,000**
	참관인	100,000
제21대 대선(2025년) <국비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90,000
	개표사무원	**75,000**
	참관인	100,000
제9회 지선(2026년) **<지자체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90,000
	개표사무원	**75,000**
	참관인	100,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수당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단위의 행정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이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및 사무 집행은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7] 그럼에도 지방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 등에서는 매 선거마다 수당 지급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사무의 국가적 책무를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77조에 따라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방선거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7)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8)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거나 특정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2008.6.26. 2005헌라7)이라고 판시하여, 지방선거 관리사무가 자치사무임을 선언한 바 있으나, 당시 판결시보다 현재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특히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평균 20% 내외에 불과한 수준임.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선거사무 경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강원·전남·경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선거 인력 수당만으로도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큰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필요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보조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을 감시·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개표사무원은 실제 개표 절차를 집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크나, 현행 수당 체계에서는 개표사무원의 수당이 참관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9)]

□ 이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는 개표사무원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당을 참관인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개표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9) '선거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p.46

□ 따라서, 지방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수당 수준을 적용하면서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재원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개표사무원은 실제 개표 절차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참관인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의 수당을 참관인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당사무지원(1132-320)

○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및 기능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상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보안 내재화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면서 노후화된 회계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전자회계보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무 점검 및 제도 보완을 병행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당사무지원 사업은 건전한 정당활동 및 정책 정당 기반 조성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정책연구소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6,600만원 대비 6억 900만원 증액(922.7%)된 것임.

<2026년도 정당사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29	640	611	2106.9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37	35	△2	△5.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상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보안체계 구축 필요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내 세부내역사업인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사업은 후원인의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의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 서비 및 솔루션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900만원이 순증되었음.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609	
내용별	비목별
· 정치후원금센터 서버 및 솔루션 구입 184 - 위·변조 방지 솔루션(14×2식) 28 - HCI 서버(52x3식) 156 · 정치후원금센터 서버이관 및 기능개편 용역 425 - 웹서버이관 및 시스템개편 398 - 사업감리 27	· 관리용역비(210-15)=425 · 자산취득비(430-1)=18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후원금센터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내역 관리 등 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약 4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으며, 후원인의 조세감면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후원 계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약 4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업무망뿐만 아니라 대국민망(인터넷망)에서도 세부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보안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정치후원금센터 개인정보 보유 항목>

구 분	개인정보 수집항목
(대국민망) 이용자(후원인)	◦[필수] 후원회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직업, 후원금액, 후원일자 ◦[선택] 이메일주소, 회사명
(대국민망) 후원회 관리자	◦(후원금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부금액, 기부일자, 입금일자, 주소, 연락처, 직업 ◦(후원회 관리) 지정권자명, 소속정당, 지역구,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학력, 경력
(업무망) 위원회 관리자	◦(기탁금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부금액, 기부일자, 주소, 연락처, 직업, 입금일자 ◦(시스템 이용 신청관리) 후원회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회계책임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사무실(주소, 전화번호), 기부금 수령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10]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11]에 따르면,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신규 구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정치후원금센터의 시스템 보강사업은 전자결제 기능 추가, 서버 이관 및 프로그램 재구축 등 개인정보파일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전자결제 기능 추가 및 서버이관 용역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이는 법령상 의무이행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등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이 곤란할 우려가 있음.

---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최근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고, 공공기관과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이버 공격이 확산되는 추세임.[12] 특히 KT의 경우 결제 관련 인증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SK텔레콤은 수천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대규모 정보보유 기관의 관리소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정치후원금센터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보다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특정 개인이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했는지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로, 정치후원금 관련 정보는 그 비밀성과 보호 수준이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사업과 서버 이관 및 기능개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전자결제 기능 도입과 영수증의 전자적 발급 등 신규 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고,

12) '국정원 "정부기관·첨단 기술까지 해킹 시도 정황"', YTN, 2025.11.05.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개인 정보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 후원회 설치 대상자 증가와 회계보고 시스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 202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13] 정치자금 회계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회계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 지원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직결되며, 특히 새로 도입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공적 관리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2015년에 개발된 이후 유지보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술적 노후화가 심각하고, 설치형 구조 및 복잡한 입력 절차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프로그램 설치와 입력 과정이 번거롭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회계보고 기한마다 처리 오류와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임.[14]

---

13)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 더욱이,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으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예상 사용자 수는 기존 1,088개의 후원회에서 7,720개의 후원회로 약 7배 증가할 전망으로, 기존 후원회의 트래픽 이용에도 불편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추가될 대규모의 사용자로 인해 사이트 이용량 폭증, 트래픽 과부화가 우려됨.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예정)자 현황>

법 개정 이전 사용자(1,088)		법 개정 이후 추가 사용자(7,720)		
		지방의회의원 및 후원회(정수)		후원회 등록수 (25. 9. 1. 기준)
중앙당(49), 시도당(392), 정책연구소(13), 창당준비위원회(1)	⇒	시·도의회의원	의원(872)	268 (회계보고 대상 536)
중앙당후원회(33)			후원회(872)	
국회의원(300)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의원(2,988)	278 (회계보고 대상 556)
국회의원후원회(300)			후원회(2,98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지방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이 3,000만원~5,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전담 회계인력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보좌진을 활용하기에도 새로운 회계업무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은 만큼, 회계보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실제 2025년 9월까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률이 저조한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회계 처리 부담이 지목되고 있어 제도 활용에 애로가 나타나고 있음.

14)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개발 언어도 Delphi 기반이라 유지·보수가 어렵고, 사용 절차가 복잡하여 정치자금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정치자금 회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방정치권의 자율적 회계역량을 강화하고, 전자보고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와 소액 후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편의성 강화뿐만 아니라, 전자보고 전환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 점검 및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면서 정치자금 회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노후화된 기존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의원들의 회계처리 부담과 제도 활용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전자회계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보고의무 점검 및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구축 대비 한정된 예산 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절약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사업은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을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선거·정당사무 등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선거 또는 정당관계자, 유권자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12억 4,000만원 대비 1억 800만원 증액(8.7%)된 것임.

<2026년도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40	1,348	108	8.7
사이버 교육·연수	545	720	175	30.4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430	300	△130	△30.2
선거·정치제도연구	265	288	23	8.7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	40	4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필요

□ ‘사이버교육·연수’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구축’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선거교육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사업임.

<사이버교육・연수 사업 세부내역사업 현황>

예산	산출내역
사이버교육·연수 720백 (+175백)	< 사이버교육·연수 720백> +175백 가.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운영) 106백(+11백) 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6백(전년동) 다.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113백(전년동) 라. (시스템 노후장비 도입교체 리스대금) 0백(순감) 마. (교육용 서버 소프트 웨어 구입) 45백(전년동) 바. (사이버교육시스템 기능개선 등) 60백(△38백) 사. (사이버교육전용회선 이용요금 등) 3백(△23백) 아.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 구축) 377백(순증) ・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 50백×1식 = 50백 ・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구축) 324백×1식 = 324백 ・ (특근매식비) 9천원×4명×12일×6월 = 3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시스템은 2006년에 최초 구축된 이후 한 번도 전면 개편이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 이상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 구조가 오래되고 보안 취약점이 누적되어, 최근 국가정보원·KISA 보안 컨설팅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다수 제기되었음.

- 예를 들어 파일 업·다운로드 및 DB 통제 취약, 관리자 계정 탈취 가능성 등의 보안 위험이 발견되었고, 학습 관리 측면에서는 진도율 체크 외에 별다른 수료 통제 장치가 없어 무늬만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또한, 기존 사이버교육 포털은 PC 웹브라우저 기반으로만 서비스되고, 모바일 접속 시 화면 호환이 되지 않거나 기능 이용이 어려워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오늘날 많은 국민과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학습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모바일 지원 부재는 참여 저조와 학습효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선거교육 관리체계의 분산 운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은 △국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선거관계자 대상 사이버교육,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으로 구분되나, 각 교육이 별도 시스템 또는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현재 민주시민 대상 오프라인 연수 신청과 자료 제공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civicedu.go.kr)를 통해, 사이버교육은 별도 온라인교육포털(portal.civicedu.go.kr)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 직무교육은 전용 시스템이 없어 엑셀 등으로 수기 관리되고 있음.

<사이버교육을 위한 중앙선관위 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민주시민교육	사이버교육	직무교육
이용사이트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civicedu.go.kr)	온라인교육포털 시스템 (portal.civicedu.go.kr)	별도 없음 (수기관리)
주요기능	민주시민 연수 신청, 민주시민교육 자료 다운로드	선거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	위원회 직원 교육
이 용 자	국민, 각종 학교 및 단체 등	국민, 선거·정당관계자, 공정선거지원자 및 직원 등	위원회 직원
회원수 등	회원 약 85,000여명 콘텐츠 350여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이원화·분산된 교육관리 체계로 인해 교육 수요자 및 이력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어려운 실정임. 예를 들어 동일인이 민주시민교육과 사이버교육에 모두 참여하더라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의 누적 관리나 인사·성과평가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선거교육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다만, 자체 시스템 고도화, 보안 강화, 교육시스템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이 타 기관의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과의 규모 또는 예산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계상된 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중앙부처 기관 교육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추진연도	사업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통합교육시스템 고도화	2020	1,3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교육시스템 구축	2021	997
한국저작권위원회	차세대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 구축	2022	97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계상된 예산 규모로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면적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다만, 통상의 정보화 성격의 사업은 시스템의 개편 및 고도화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상 1차년도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화 사업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초기 연도부터 일괄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원을 절약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다.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사업 '선거연수원 운영' 사업으로 재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은 1996년 선거연수원 창설 이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선거관리 대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기념식 개최 등을 위한 사업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유공자·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매 10주년마다 선거연수원 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직원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기념행사 개최현황 >

일 자	장 소	개 최 내 역	참 석 대 상	비 고 (소요예산)
매년 5. 10. (2024년)	중앙위원회 대강당 (과천)	제13회 「유권자의 날」[15] 기념행사	270명 (유공자, 유권자, 직원 등)	60,000천원
2016. 5. 27.	연수원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120명 (유관기관, 직원 등)	67,400천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유권자의 날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해방 이후 보통선거를 최초로 실시하였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한 것인데, 1948년 5월 10일은 총선을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날임.

□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선거연수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영상 상영, 경과보고, 발자취 사진전, 비전선포식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거연수원의 과거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관 자체 기념행사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됨.

<선거연수원 30주년 기념 사업 개요>

가. 기념식 개최 ◦ 시　　기: 2026. 10월중　※ '26년도 하반기 상황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 ◦ 장　　소: 선거연수원 청사 內 ◦ 참석대상: 200명 정도(내부 80, 외부 120) ◦ 내　　용 - (기념식) 기념사 및 축사, 창설 30주년 영상상영,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 (전시회) 연수원 30년 발자취 사진 전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진공모전 수상작 관람 나. 비전 선포식 실시(기념식에 포함) ◦ 비전 홍보영상 상영을 통한 새로운 비전 선포 ※ 향후, 국가인재개발홍보지 등에 게재 의뢰하여 비전 홍보·확산 ※ '25년 하반기 비전 재설정 TF팀 운영 및 의견수렴 실시 다. 부대행사 ◦ 역대 선거연수원장님과의 대화(기념식 개최 이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러나 동 세부사업인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 교육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선거연수원의 운영행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본래의 교육·연구 중심 사업임.

□ 한편, 선거연수원은 이미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을 통해 운영비, 청사관리, 환경개선 등 기관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 또한,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과 관련한 CI 제작 및 교체 예산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선거연수원운영 사업 내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연수원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9월까지 CI 개발을 통해 10월 예정된 30주년 행사에서 제막식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보이며, 기념행사 예산과 동일한 취지의 예산 편성으로 보임.

<선거연수원 CI 개발 및 제작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ㅇ 선거연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선거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연수원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
- ㅇ CI 개발·활용을 통한 선거교육·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2. 필요성
- ㅇ 선거연수원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되는 함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 ㅇ CI 관련 응용 도안 활용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근한 기관 이미지 정립

3. 주요내용

가. 선거연수원 CI 개발·제작
- ㅇ 시　　기: 2026. 9월까지
- ㅇ 방　　법: 개발업체 선정 및 위탁
- ㅇ 개발사항: 기본디자인시스템 및 응용디자인시스템

<전문업체 제작사항>
□ 기본디자인시스템 : 심볼마크, 로고타입, 엠블럼, 전용색상, 시그니처
□ 응용디자인시스템 : 명함, 서식류, 전자홍보매체, 사인물 등
⇒ 계약·개발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CI 활용: 선거연수원 시설물 및 홈페이지, 각종 서식 등 정비

4. 소요예산: 78,100,000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검토'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사업의 일반수용비가 선거연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등에 사용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음.[16)]

이에 따라 당시에도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 해당 지출을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현재의 30주년 기념행사 역시 예산의 목적과 사업 성격의 일치성 측면에서 동일한 검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동 기념행사는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을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1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p.1127

4.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를 마련하며, 홍보예산 증액 또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은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선거관리 신뢰 및 주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48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7억 4,000만원 대비 40억 9,700만원 증액(553.6%)된 것이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로 인한 예비비 배정 후 예산현액 74억 3,500만원 대비 25억 9,800만원 감액(△34.9%)된 것임.

<2026년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명선거기반조성	7,435	4,837	△2598	△34.9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17	-	△17	순감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636	469	△167	△26.3
정치자금 등 홍보	66	51	△15	△22.7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계도홍보	-	4,316	4,316	순증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21	1	△20	△95.2
대통령선거 계도홍보	5,723	-	△5,723	순감
대통령재외선거 계도홍보	972	-	△972	순감

※ 주: 2025년 예산은 예산현액 기준이며, 제21대 대통령선거로 대통령선거 계도홍보, 대통령재외선거계도홍보 내역사업에 각각 5723백만원, 972백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공명선거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방식 검토 필요

□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매우 공감' 30%, '대체로 공감' 13%를 합하여 43%에 달하여,[17]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적 불신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

(단위: %)

조사완료 사례수(명)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1005	30	13	12	42	4

※자료: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한 선거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후에는 동일한 소장을 바탕으로 지역구와 원고만 바꿔 제기하는 형태의 소송이 반복되어, 일부 변호인들이 하루 30건에 달하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출하는 등 100건이 넘는 유사 소송이 복제·증식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양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한 비정상적 선거소송 남발이 집중된 결과로,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18]

17)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정치현안여론조사' 2025.01.23.

18) 21대 총선 직후 보름 만에…부정선거 음모론 '복붙 소송' 100여건, 한겨레, 2025.08.28.

□ 최근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유튜브(Youtube), X(前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재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세력은 정당 현수막이나 거리홍보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26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약 2,000~3,000여 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거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선거의 공정성 및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의혹을 없애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2026년도 선거 대응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여론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은 2025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위촉사무원 교육의 형식적 운영, 투표장 관리 부실 등 중앙선거관리체계의 허점이 '부정선거 의혹'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이러한 불신을 키워간다고 지적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제한적인 보도자료 배포나 단편적 홍보, 관련 기사 스크랩 등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뢰 회복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참여형 소통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 주요 대응 방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액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및 허위정보에 대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충분한 홍보·교육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 중 홍보사업 현황>

2025년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주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636백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53백만원>** 가.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25백만원 나. (홍보여비) 2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26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377백만원>** 가. (소셜미디어 운영 등) 90백만원 나. (중앙 공식 온라인 영상채널 운영) 268백만원 다. (업무협의 등) 9백만원 라.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10백만원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00백만원>** 가.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0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 활동 6백만원>** 가. (언론취재지원) 4백만원 나. (업무협의비) 2백만원	주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469백 **(△167백)**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35백만원> - △18백만원** 가.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11백만원 - △14백만원 나. (홍보여비) 2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22백만원 - △4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239백만원> - △138백만원** 가. (소셜미디어 운영 등) 90백만원 나. (영상콘텐츠 제작) 130백만원 - △138백만원 다. (업무협의 등) 9백만원 라.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10백만원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90백만원> - △10백만원** 가.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90백만원 - △1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 활동 5백만원> - △1백만원** 가. (언론취재지원) 3백만원 - △1백만원 나. (업무협의비) 2백만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리 계도 홍보	**<언론매체 이용 홍보 2,008백만원>** 가. (TV·라디오광고) 1,353백만원 나. (TV·라디오 방송기획) 219백만원 다. (신문 및 잡지 광고) 436백만원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관리 계도 홍보	**<언론매체 이용 홍보 1,784백만원> - △224백만원** 가. (TV·라디오광고) 1,314백만원 - △39백만원 나. (TV·라디오 방송기획) 154백만원 - △65백만원 다. (신문광고) 316백만원 - △120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67백	**<인쇄물 및 시설물 등 이용 홍보 663백만원>** 가. (포스터 및 팸플릿 등 제작) 19백만원 나. (유권자의식조사) 90백만원 다. (투표율 분석) 20백만원 라. (홍보자료집 발간) 50백만원 마. (청사이용 홍보물) 50백만원 바. (영화상영관 이용 홍보) 60백만원 사. (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 251백만원 아. (선거사진공모전) 123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1,289백만원>** 가. (온라인 광고) 191백만원 나. (소셜미디어운영) 273백만원 다. (영상 콘텐츠 제작) 173백만원 라. (투개표과정 영상서비스) 351백만원 마. (선거홍보사이트 운영) 301백만원	4,316백 (△1,251백)	**<인쇄물 및 시설물 등 이용 홍보 185백만원>** **-△478백 만원** 가. (포스터 및 팸플릿 등 제작) -순감 나. (유권자의식조사) -순감 다. (투표율 분석) 20백만원 라. (홍보자료집 발간) 50백만원 마. (청사이용 홍보물) 50백만원 바. (영화상영관 이용 홍보) -순감 사. (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 -순감 아. (선거사진공모전) 65백만원 -△58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851백만원>** **-△438만원백** 가. (온라인 광고) 185백만원 -△6백만원 나. (소셜미디어운영) 202백만원 -△71백만원 다. (영상 콘텐츠 제작) 137백만원 -△36백만원 라. (투개표과정 영상서비스) -순감 마. (선거홍보사이트 운영) 327백만원 +26백만원
재보궐 선거 관리 계도 홍보 21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15백만원>** 가. (언론매체 홍보) 15백만원 **<인쇄물 이용 홍보 6백만원>** 가. (인쇄물 홍보) 6백만원	재보궐 선거 관리 계도 홍보 1백 (△20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0백만원> -순감** 가. (언론매체 홍보) -순감 **<인쇄물 이용 홍보 1백만원> -△5백 만원** 가. (인쇄물 홍보) 1백만원(+5백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세부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상시적 홍보사업 성격의 ‘각종 계기 이용 홍보사업’ 및 ‘인터넷 등 이용 홍보사업’이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홍보 예산인 ‘언론매체 이용 홍보’, ‘인쇄물 및 시설물 이용 홍보’, ‘인터넷 등 이용 홍보’ 항목 역시 모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상시적·선거대비 홍보 모두에서 예산 축소로 인한 홍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정선거 의혹 대응 및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혹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5년 간 홍보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됨에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정확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통합적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팩트체크 기반 콘텐츠 강화, 지역단위 소통형 캠페인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선거 홍보 및 유권자 교육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예산의 부분적 증액 또는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관 건물 완공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록관 개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해 기록물 이관 등 관련 예산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사업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고 선거·학술 자료 및 선거역사를 기록·보존·전파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5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13억 1,300만원보다 43억 1,300만원 증액(328.5%)된 것임.

<2026년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기록물관리	600	444	△156	26.0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364	297	△67	△18.4
선거기록관 건립	349	4,885	4,536	1,299.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기록물 이관 등 예산 증액 논의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거기록관 건립은 선거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영구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참여·소통형 기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5억 2,300만원과 선거기록관 시설장비 설치·시공 등을 위한 33억 6,200만원 등 총 48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선거기록관 시설장비 설치·시공 예산은 현재 공사중인 선거기록관 완공 후 필요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선거연수원 내 부지에 2023년 12월부터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선거기록관을 건립 중임.

<선거기록관 건립 개요>

○ 사업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선거연수원 내) ○ 사업규모 : 연면적 8,115㎡(지상3층, 지하1층) ○ 공사기간 : 2023.12.~2025.12. ○ 총사업비 : 243억 8,100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선거기록관이 2025년 12월 완공되면 현재 선거연수원 별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들을 선거기록관으로 이전하여 개관을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록물의 이관을 위한 용역비와 준공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시설관리인력 및 기록물 검수인력의 고용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었음.

<선거기록관 개관 관련 예산 반영 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	2026년 정부안 (B)	추가 확보 필요 예산 (A-B)	비 고
보존서고 등 제작	2,748	2,625	123	
- 이동식서가 설치	1,731	1,731	-	
- RFID시스템 설치	881	881	-	
- 디지털 온·습도계	13	13	-	
- 기록물 이관 등	123	-	123	① 국회증액요청
보존·복원 장비 도입	918	737	181	
- 저산소 소독장비	481	481	-	
- 보존상자제작기기 등	185	185	-	
- 수선·복원장비류	252	71	181	('27년도 예산요구)
디지털화 장비 도입	1,909	-	1,909	
- 스캐너(3종)	611	-	611	('27년도 예산요구)
- 시청각기록물 관련장비	1,298	-	1,298	
사무환경 구축 및 청사운영	1,657	-	1,657	
- 공공요금 등	457	-	457	② 국회증액요청
- 인 건 비	331	-	331	③ 국회증액요청
- 각종 비품·집기류	528	-	528	('27년도 예산요구)
- 청사시설·장비 유지 등	341	-	341	
전시체험관 설계·시공	4,235	-	4,235	
- 전시관 설계 및 시설물 구조	1,403	-	1,403	('27년도 예산요구)
- 진열장 및 전시 콘텐츠 제작	2,832	-	2,832	
총 계	11,467	3,362	8,1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선거기록관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개관준비를 위한 기록물 이관 등이 2026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선거기록관에는 기록물없이 일부 보존장비만 도입되어 기록물 보관시설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2026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2026년 내 기록물 이관작업 등을 완료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7년도에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후, 2027년도 하반기에는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적정 예산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록물 이관을 위한 용역비와 공공요금, 관리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9억 1,1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구체적으로, 기록물 이관에 1억 2,300만원, 공공요금 등에 4억 5,700만원, 인건비로 3억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선거기록관 개관 준비를 위한 기록물 이관 등	기록물 이관	123
	공공요금 등	457
	인건비	331
계		9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제교류협력(7132-345)

○ A-WEB이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유지와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사무처의 기본 운영비 등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비목 변경 또는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서울 국제선거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선거제도 비교·연구・관리기법 공유 등을 통해 선거를 매개로 민주주의 분야에서 국제협력관계를 증진 및 강화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 예산 9억 2,600만원 대비 6,900만원 증액(7.5%)된 것임.

<2026년도 국제교류협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제교류협력	926	995	69	7.5
국제교류협력	190	409	219	115.3
A-WEB 운영지원	736	586	△150	△2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사업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동 사업은 '국제교류협력'[19]과 'A-WEB 운영지원'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사업비이고, 후자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은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 증액된 반면, A-WEB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은 1억 5,000만원 감액되었음.

□ A-WEB 운영지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20] 경상경비·인건비 등을 A-WEB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9년 감사원 감사와 2022년 기획재정부 평가 등을 계기로 ODA[21]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지원만 유지되고 있음.

<연도별 A-WEB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963	1,314	3,309	7,948	7,896	**1,501**	1,189	1,373	1,313	**782**	**912**	**736**	**58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

19) 해당 내역사업은 '서울국제선거포럼',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을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2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ODA사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

□ A-WEB은 2013년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된 세계 최대 선거기관 협의체로 111개국 1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설 이후 연수·회의·선거참관 등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해 온 기구로 평가됨.

<A-WEB 현황>

- **창설:** 2013 A-WEB 창립 총회 개최 및 헌장 채택 계기
- **근거 법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
- **조직:**
  -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회원 대상, 격년 단위, 2026.9. 이후 필리핀 개최
  -집행이사회, 사무처 등
- **사무처 조직:** 사무총장, 5부·5팀, 인력 11명(정규직 7명, 중앙선관위 파견 4)
- **운영 예산:** (2025년) 7억 3600만원
  -편성내역 : 인건비 4억 3,900만원, 사무처 운영비 2억 3,800만원, 사업비 5,900만원

※ 자료: A-WEB

<A-WEB 대륙별 회원기관 현황>

(2025.9. 기준)

대륙별	국가수	기관수	주요국가
유럽	19	19	프랑스, 포르투갈, 튀르키예, 폴란드 등
아시아	24	26	대한민국, 인도,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메리카	26	31	캐나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아프리카	36	39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오세아니아	6	6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합계	111	121	

※ 자료: A-WEB

□ A-WEB은 한국형 선거관리 경험과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22]를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며, 민주적 선거제도 확산과 가치기반 외교 추진이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A-WEB을 통한 국제협력은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외교적 영향력 확장에도 기여함.[23]

22) 강제력이나 물질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매력과 설득을 통해 타국의 선호를 변화시키는 능력

□ 또한, 인천 송도에 위치한 A-WEB 본부 유지는 외교적 상징성을 넘어,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24)]

□ 물론 A-WEB의 활동 성과나 실질적 효용성이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부를 우리나라에 계속 유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존재하나, 한국형 민주주의의 발전 경험과 선거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주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A-WEB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음.[25)]

□ 또한, A-WEB이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만큼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회원국 중에는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연회비 납부가 어려운 국가가 다수 존재하여 실질적인 분담금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임. 더불어 현행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

23)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선거관리 및 민주주의 제도 정착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음. 각국의 선거관리기구들은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선거과정을 개선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민주적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은 지원 대상국의 선거 수준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 음선필, 2015.] 참고).

24) 참고로, 2023년 A-WEB 회원기관 설문조사 결과, A-WEB에 대한 만족도는 4.35(5점 만점), 설문 참여기관 중 타 기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 기관은 전체 기관 중 91.8%, A-WEB과 회원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도 96%에 달했으며, A-WEB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유용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연수(33%), 선거참관(31%) 등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A-WEB의 운영 및 세부사업을 수행 중인 사무처에 대한 세계 다른 선거기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25)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기존 22위에서 10계단 하락하며 32위를 기록하였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 8.09점(22위)에서 하락했고, 이는 2006년 지수 산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임. 다만,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 정부 기능 7.50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5.63점 ▲ 시민 자유 8.82점을 기록했지만,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는 9.58점을 기록하며, 선거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상경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 파견 및 예산 집행내역 보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바, 예산확보구조 및 근거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가에 의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A-WEB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26)]

□ 참고로, 현재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 내역사업에 계상된 증액분(2억 1,900만원)은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예산으로, 해당 사업은 A-WEB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 A-WEB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 내역사업에 계상된 증액분(2억 1,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여 A-WEB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27)]

□ 또한,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회원기관을 상대로 자체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초청연수사업', '회원기관 선거법 자문' 등을 위해 별도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28)]

---

26) 이와는 별도로, 회원국의 분담금에 의한 기관운영 지적에 대하여, A-WEB은 연회비 집행 내역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의 보고 사항이고, 회원국들 중 정치적 불안정 등을 겪고있는 나라가 다수 존재하여 연회비 납부 자체가 어려워, 회원국 분담금의 여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임.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임.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 전산시스템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 재확산 및 각종 정보보안 이슈 증가로 인해 선거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선거정보센터 UPS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재해복구센터 전환훈련의 정례화 및 본·사전투표 데이터의 전면적 이중화 구축을 통해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은 효율적인 선거행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7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184억 9,100만원 대비 93억 9,000만원 증액(50.7%)된 것임.

<2026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7
정보시스템유지관리	10,421	10,369	△52	△0.5
정보통신망운영개선	4,287	4,287	-	전년동
정보기반보호강화	3,783	3,434	△349	△9.2
선거기반체계고도화	-	9,791	9,791	순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 A-WEB이 추정한 비목 변경을 통한 운영비 예산외, 기관 사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총 3억 1,900만원 수준임.

나. 적정 유지보수 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 논의 필요

□ 전산운영경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선거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기반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전산시스템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 재확산 및 각종 정보보안 이슈 증가로 인해 선거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29)]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정보보안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컨설팅 결과 해킹에 의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며,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보안컨설팅 결과 발견된 미흡·미조치건에 대한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29)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도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2025.10.15. 2025년도 국정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이달희 위원 질의

<보안컨설팅 개요>

○ 기간 : 2023.7.3.~2023.9.22.(약 10주) ○ 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대상 :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신망 및 선거장비 ○ 결과 : 시스템 취약점 지적사항 186건 중 174건 조치완료 / 미조치(12건) 건은 대규모 예산(망분리 등)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2024년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예산 파악을 위해 외부 보안업체와의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적정 유지보수 예산을 17억 400만원 가량으로 추산하였음.

<컨설팅 결과 시스템 유지보수 산정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시스템명	구축비용(구매가)	적정 유지·보수금액
1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시·도 포함)	2,650	427.2
2	조사단속통합관리시스템	1,969	196.8
3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4	위탁선거관리시스템(소관부서 자체산정)	-	171
5	디지털포렌식온라인인증시스템	863	129.4
6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850	127.5
7	정치후원금센터	747	112
8	기록관리시스템	668	100.1
9	통합법규안내시스템	604	90.6
1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459	68.8
11	정책공약마당	359	53.8
12	선거법규포털시스템	219	32.8
13	정보공개시스템	189	28.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홈페이지	186	27.9
15	동영상모니터링시스템	156	23.4
16	사이버선거역사관	154	23.1
17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	153	22.9
18	재외선거홈페이지	120	18
19	사료관리시스템	83	12.4
20	영문홈페이지	-	10

2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홈페이지	47	7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홈페이지	40	6
23	선거구획정프로그램	40	6
24	선거보도모니터링시스템	22	3.3
25	심의통합시스템	21	3.1
26	도서관리시스템	19	2.8
합 계		10,618	1,704.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1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유지보수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기능 강화 등 시스템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예산 17억 400만원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예산 15억 5,600만원의 차액인 1억 4,8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기편성예산	1,556
	필요예산	1,704
	국회 증액 필요금액	1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선거정보센터 UPS와 배터리 간 분리 등 안정성 강화와 이중화를 위한 재해복구센터 점검 필요

□ 2023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개정되면서,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실과 배터리실은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함. 동 지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벽체 간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해야 함.[30]

□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배터리와 서버 전산장비가 동일한 공간에 집적되어 설치되는 경우, 배터리 발화가 곧바로 서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이 존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전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 중앙청사 내 선거정보센터는 서버실과 UPS 및 배터리실로 구성되어 있음. 서버실과 UPS·배터리실은 콘크리트 격벽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UPS와 배터리실은 별도의 격벽 없이 동일한 공간에 함께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

---

30)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센터 등 전산센터는 2023년 이전에 구축된 시설로,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임.

<선거정보센터 내 UPS 및 배터리실 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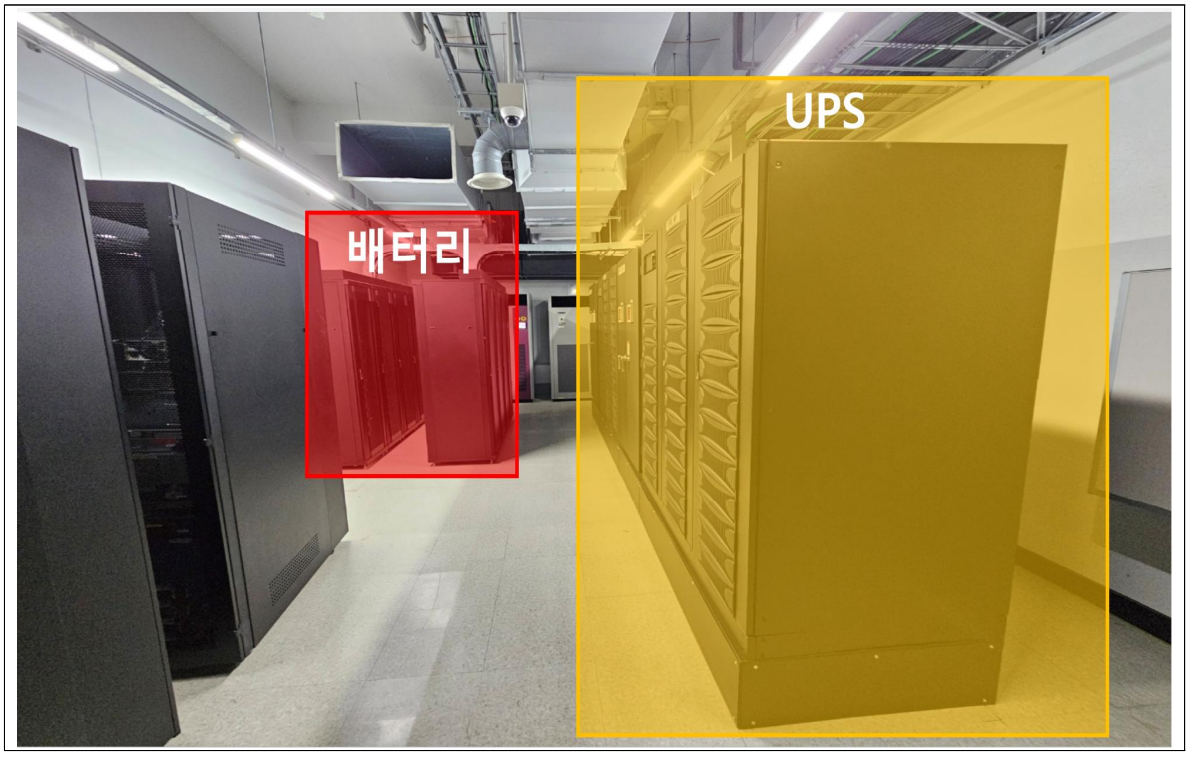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선거 기간 중 배터리 화재 등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바, UPS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거정보센터의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의 운영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거정보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데이터 이중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해 한쪽 센터가 마비될 경우 다른 센터가 즉시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거정보센터와 별도로 대전 지역에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대선 전까지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통합명부시스템의 핵심 데이터에 한해 부분적 이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 완전한 이중화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본투표 관련 데이터의 이중화도 미흡한 상황임. 본투표 데이터가 투·개표 기록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전투표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투표 당일 재난·재해 발생 시 선거관리 및 데이터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기적으로는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서버실 안전관리, 그리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듀얼 서버 가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서는 7억 9,6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선거정보센터 내 UPS실과 배터리실 분리를 위해 필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액	비 목
기본조사 설계비	배터리실 기본설계	20	420-01
공사비(시설)	철거·건식벽체·소화·누수감지 등 공사	152	420-03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신규 배터리	434	430-01
공사비(배터리 이전)	배터리 이전 공사 및 기존 사무실 이전 공사	170	210-09
감리비	공사 감리	20	420-04
합 계		7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선거정보센터의 재해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재해복구센터의 전환훈련을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뿐만 아니라 본투표 데이터를 포함한 전면적 이중화 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어떠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투표정보의 보존성과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8. 청사관리(7132-35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집행사례, 공공요금 인상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청사관리에 필요한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산출된 필요예산이 적시에 반영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청사 관리인력 인건비 지급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6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청사관리 사업 250억 500만원 대비 17억 700만원 증액(6.8%)된 것임.

<2026년도 청사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청사관리	**25,005**	**26,712**	1,707	6.8
청사시설 보수	1,252	1,312	60	4.8
청사 유지관리	11,992	12,626	634	5.3
청사관리 인건비	2,062	2,234	172	8.3
사회복무요원관리	9,699	10,540	841	8.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 파악 노력 필요

□ 동 사업 내 청사 유지관리 내역사업의 2026년 예산은 125억 5,400만원으로, 이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40억 1,400만원, 임차료(210-07목) 63억 5,2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그런데, 공공요금및제세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하여 집행하였고, 동 예산이 전년 대비 11억원 증액된 2025년에도 6억원을 이·전용하는 등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임.

<2023~2026년 청사 유지관리 내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도	3,155	-	1,058	-	4,213	4,079	1	133
2024년도	1,916	-	1,583	-	3,499	3,368	-	131
2025년도	3,016	-	600	-	3,616	1,995		
2026년도	4,01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2026년도 예산안에 동 예산이 2025년 대비 9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2026년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액이 51억 7,2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최대 11억 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사 유지관리 내 공공요금및제세 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대선,지선)	2023년	2024년 (국선)	2025년 (대선)	2026년(안) (지선)
편성액(A)	2,574	2,722	3,155	1,916	3,014	4,014
집행액(B)	2,721	2,375	4,079	3,368	4,338 (추정)	5,172 (추정)
과부족액(A-B)	-147	347	-924	-1,452	-1,324	**-1,102**

※ 2026년도 집행액은 선거가 없었던 2023년도 집행액에 연간 물가상승률(2%) 적용한 것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관련 지출을 최대로 가정한 것이며,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기료 등 별도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은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31]

□ 다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별도 예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편성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요금및제세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편성예산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임.

31) 실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은 편성액 27억 2,200만원 대비 23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3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예산의 이·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차년도의 필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전용을 통한 부족분 충당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집행사례, 공공요금 인상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산출된 필요예산이 적시에 반영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분리된 부분적 이용 허용 또는 독립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지속적 활용성과 공공 온라인 민주주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거 집행내역 등을 참고하여 불용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규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은 온라인투표의 단계적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액 5억 6,300만원 대비 800만원 감액(△1.4%)된 것임.

<2026년도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56	50	△6	△10.7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507	505	△2	△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성과 향상 필요

□ 온라인투표란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전자적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자적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송·집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투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투표의 비밀성 보장, 중복투표 방지,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등 신뢰성 확보 및 구축이 필수적인 제도적 요소로 요구되는 방식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구축하여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021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온라인투표의 민간시장 보호·육성을 위해 민간영역의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종료하고 현재는 국가 및 공공기관·단체, 정당 등 공공영역의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보안체계를 강화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해당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은 매년 평균 5억 5,600만원이 소요되며 최근 5년간 총 27억 8,000만원, 2026년도 예산안에는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음.

<최근 5년간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비 및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건 수)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사업비	531	568	563	563	555	2,780
지원실적	1,612	1,371	1,007	545	-	

주: 2025년 지원실적은 2025년 9월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실적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2년에는 1,612건이었으나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25년 9월 말 기준 545건에 그친 상황임.

□ 이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부족, 사용자 편의성 저하, 기관 및 단체의 활용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제도적 신뢰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별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 인원 규모는 당내경선 등에서 활용되는 정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원 건수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임원 선거 등을 이유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선거권이 제한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투표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투표 참여에 대한 기술적·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수,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9월말)	
		지원건수	투표인원	지원건수	투표인원	지원건수	투표인원	지원건수	투표인원
정당		68	213,710	41	412,384	61	474,516	35	659,339
국가기관		10	1,850	7	1,837	9	1,429	10	1,765
지방자치단체		76	17,503	57	15,465	54	12,265	26	5,769
공공기관		52	28,398	66	31,822	51	21,846	22	12,735
학교	초등	469	130,809	334	104,084	235	81,727	122	34,590
	중등	388	158,458	336	135,220	222	107,266	51	15,940
	고등	464	165,466	414	157,594	249	120,080	233	102,658
기타		85	53,312	116	104,278	126	164,695	46	48,356
합계		1,612	769,506	1,371	962,684	1,007	983,824	545	881,15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지원 건수의 전반적 감소 추세는 학교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교 대상 온라인투표 지원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025년 9월 말 기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지원 감소의 원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이용 제한 기간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조합장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일 30일 전부터 10일 후까지는 이용이 제한되고, 전국 단위 선거가 대부분 4월에 집중되어 있어,[32] 학생회 임원선거가 주로 이루어지는 3월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함. 이에 따라 학교 대상 온라인투표 지원이 매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제도를 통해 각종 선거를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의 주기나 실시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매년 선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K-voting 시스템의 이용 제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의 존재 목적과 활용 가치가 점차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직선거 등 선거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임.

□ 다만, 온라인투표서비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화된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신청인의 이용 신청 이후 안내 및 단순 질의응답 수준에 그치므로,

32) 최근 전국단위 선거 - 22년 :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 23년 : 3월 동시조합장선거 / 24년 : 4월 국회의원선거 / 25년 : 3월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해당 업무로 인해 공직선거 업무 수행 자체가 곤란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의 제한 취지는 온라인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시스템 운영의 기술적 부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 내의 위탁선거나 공공·비정치적 선거 등에 한해 부분적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운영적 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K-voting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의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은 대국민 안내홍보 및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해 온라인 투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으로 2025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해당 내역사업의 경우 2024년도 편성예산 5,600만원 중 2,2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25년에도 7월말 기준으로 200만원만 집행되는 등 편성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2021년도	76	76	42	-	34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업무 제한으로 여비(25백) 등 불용
2022년도	76	76	39	-	37	- 상반기 양대선거 실시에 따른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안내·홍보 등 여비 집행 저조
2023년도	61	61	50	-	11	-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2024년도	56	56	22	-	34	-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온라인투표 이용 제한 및 영지식증명 검증 등을 적용한 신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시스템 전환 연말 완료로 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안내·홍보 관련 비용 집행잔액 발생
2025년도 (7월말 기준)	56	56	2			- 상반기 대선 등 선거실시로 온라인투표 제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 2025년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실시에 따라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고, 2023년의 경우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액된 비목은 2024년도에 100% 집행된 일반용역비(210-14목)이며 그 외 예산은 2024~2025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된 점, 2026년 6월에도 동시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예산이 불용 없이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2024~2026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7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일반수용비 (210-01)	15	-	-	15	15	-			14
일반용역비 (210-14)	5	5	-	-	5	-			-
국내여비 (220-01)	18	12	-	6	18	-			18
사업추진비 (240-01)	12	5	-	7	12	2			12
일반연구비 (260-01)	6	-	-	6	6	-			6
합계	56	22	-	34	56	2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거 집행내역 등을 참고하여 불용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규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